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56 발의연월일: 2025. 2. 18.

발 의 자 : 윤영석 • 박덕흠 • 이종배

임종득 • 조경태 • 구자근

김태호 · 김상훈 · 김소희

윤한홍 • 진종오 • 서지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물운전(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 사용 후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인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마약보다 처벌이 약한 환각물질(이산화질소, 부탄가스 등) 흡입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약물운 전보다 법정형이 높음.

2023년에는 마약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행인을 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마약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2023년 기준 91건으로 전년(79건)보다 15.2% 증가했고 2020년 54건에 비해서는 69% 증가함. 그러나 여기에 대해 단속 및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약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의2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8조의2(벌칙) ① ~ ③ (생	제148조의2(벌칙)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4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	
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	
한 사람은 <u>3년</u> 이하의 징역이	<u>5년</u>
나 <u>1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	<u>5천만원</u>
한다.	